

---

# 「로봇부품 실증사업」 2021년도 지원과제 모집공고

---

# 목 차

I. 사업개요 .....	1
II. 지원규모 및 내용 .....	2
III. 과제 선정방안 .....	4
II-1. 신청자격 및 방법 .....	4
II-2. 선정방법 및 절차 .....	6
II-3.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.....	8
IV. 추진일정 및 절차 .....	9
V. 기타사항 .....	10

# I

## 사업 개요

□ (사업목적) 국산 로봇부품의 테스트베드 및 실 수요처 적용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국산 로봇 핵심부품\*의 조기 상용화 도모

\* 그리퍼, 구동기(감속기, 모터, 구동모듈, 동력전달장치), 센서(시각센서, 역각센서, 모션센서, 자율주행센서, 기타), 제어기(지능형제어기, 모션제어기, PC형 제어기) 등

□ (과제 수행기간) 협약일 ~ '21. 11. 31. (약 8개월)

\* (성과활용 기간) 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3년, 성과활용기간 중 매년 전담기관에 성과활용 보고서 제출 의무

□ (지원규모) 국비 총 11억원 규모

\* 지원과제 수는 신청규모 및 신청과제 수 등에 따라 결정 예정

\* (별첨) "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"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

□ (지원분야) 로봇부품 실증의 사업추진 특성을 고려하여 '제품검증형' 및 '현장실증형' 과제로 분리하여 지원의 효과성 제고

구분	지원내용
제품검증형	▶ 로봇부품사(공급기업)와 국내·외 로봇 제조기업 또는 로봇수요기업 등이 협력하여 로봇부품의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실증
현장실증형	▶ 국내·외 로봇 제조기업(수요기업)과 로봇부품 제조기업(공급기업)이 협력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국산 로봇부품을 로봇제품에 탑재·적용한 후 로봇의 실수요처 현장에 적용하여 실증

## II 지원규모 및 내용

- (지원내용) 국산 로봇부품을 로봇에 탑재하여 실증하는 비용(총 사업비)의 70%이내 국비 지원
  - \* 주관기관이 대기업일 경우 과제당 총 사업비의 50% 이내 국비 지원
- 로봇부품 및 부분품의 제작·개량비, 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비, 품질인증 및 신뢰성 검증 비용 등 지원
  - \* 사업비 규모 및 내역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목적 등에 맞는 사업비 편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조정될 수 있음
  - \* 사업비 편성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컨소시엄에 있음
- (지원조건) 사업 접수 시 로봇부품사, 국내·외 로봇 제조사, 로봇 실수요처 등이 컨소시엄(2개 기관 이상 참여 필수)을 구성하여 직접 참여 필수
  - (원칙) 주관기관이 중소·중견기업, 공공기관 등 비영리기관일 경우 총사업비의 30% 이상 컨소시엄 내에서 민간부담금을 매칭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며
    - 컨소시엄에서 민간부담금 매칭시 최소 2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 반영
    -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며, 사업 종료 후 성과활용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의 소급편성은 불가
    - \*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하는 로봇 운영비용(소모품비, 운영비 등)은 컨소시엄 내 협의 후 결정
    - 사업비 편성시 로봇부품 실증 비용 외 필수 수수료(이행보증보험, 위탁 회계정산비용, 보험비용)는 편성 가능
  - (예외) 주관기관이 대기업일 경우 총사업비의 50% 이상 컨소시엄 내에서 민간부담금을 매칭하여야 하며, 컨소시엄에서 총사업비의 4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 반영

\* 사업비 편성 비율(안)

주관기관 유형	국비	컨소시엄 부담			
중소·중견기업, 공공기관	최대 70%	• 민간 현금 매칭	필수	20%~30%	최소 30% 이상
		• 민간 현물 매칭	선택	0%~10%	
대기업	최대 50%	• 민간 현금 매칭	필수	40%~50%	최소 50% 이상
		• 민간 현물 매칭	선택	0%~10%	

\* 로봇부품 실증을 위한 로봇제조사의 테스트용 로봇 등에 한하여 민간 현물 매칭 가능  
(예시, 로봇 제조기업이 생산·판매하는 로봇 등을 현물로 제공하여 실증할 경우  
현물 매칭 가능)

## □ 기타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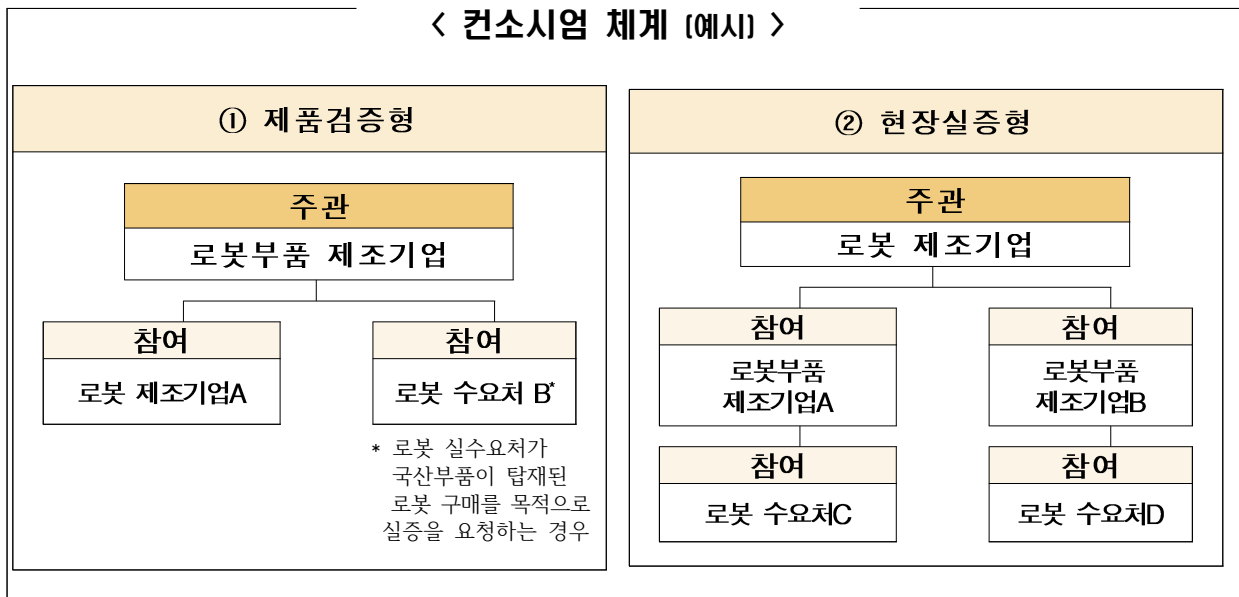
- 전담기관이 과제 진행사항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,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
- 부품 적용 시연회 및 과제별 실증 결과 공유회 개최시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
- 선정 후 국비 지원금 100%에 대한 “이행보증보험증권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함
-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 전담 은행에서 사업수행을 위한 신규 계좌를 개설하고,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함

### Ⅲ 과제 선정방안

#### (1) 신청자격 및 방법

##### □ 신청자격

- 로봇부품 기업이 필수로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되, 과제 추진 목적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
  - \* 단수 또는 복수의 로봇부품 제조기업(공급기업)과 국내·외 로봇 제조기업(로봇부품 수요기업), 로봇 수요처(로봇 수요기업) 등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
  - \* 주관기관이 사업의 성과 및 부품의 성능 검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복수의 참여기관과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



- '21년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민간부담금 매칭이 가능하여야 하며, 과제 종료 시점까지 과업수행완료가 가능한 컨소시엄
  - '제품검증형 과제'는 테스트베드에서 최소 3개월 이상, '현장실증형 과제'는 로봇 실수요처에서 최소 1개월 이상의 실증을 할 수 있는 컨소시엄

□ 신청방법

- (공고기간) '21.2.1(월) ~ '21.3.3(수), 16:00까지
- (접수기간) '21.3.2(화) ~ '21.3.3(수), 16:00까지
- (접수방법)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파일은 이메일 제출, 원본 서류는 우편(대구 본원) 제출

담당자	이메일 / 내선번호	주소
류지호 수석	thanks@kiria.org 053-210-9662	▶(대구)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로 77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혁신지원사업단 서비스로봇혁신팀

○ 제출 서류 및 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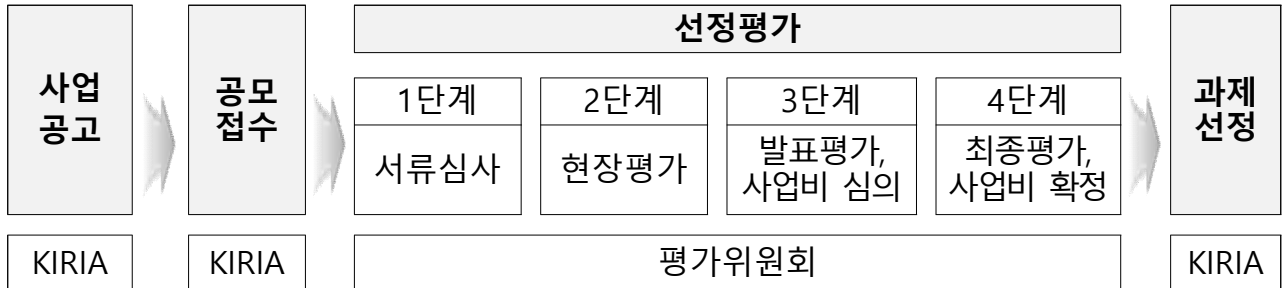
구분	제출서류	제출			비고
		지자체	기관	기업	
1	사업계획서	원본 1부, 사본 9부			-
2	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	○	○	○	각 1부 (사본)
3	법인등기부등본	-	○	○	각 1부 (원본)
4	최근 3년간('17~'19) 회계감사보고서 (감사의견 포함) 및 표준재무제표(표지 포함)	-	○	○	기업 수익 발생 법인만 제출
5	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	-	○	○	
6	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	○	○	○	
7	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○	○	○	수행기관별
8	참여의사 확약서	○	○	○	수행기관별
9	로봇 부품을 실제 촬영한 동영상 자료	-	-	○	파일 제출
10	사업비 매칭 확약서	○	○	○	대상기관 제출
11	신규인력 채용(예정) 확인서	○	○	○	대상기관 제출
12	로봇 및 로봇부품 단가 산출서	-	○	○	대상기관 제출
13	로봇 제조기업의 로봇부품 구매 확약서 또는 구매 계약서	○	○	○	해당사항이 있는 기관만 제출
14	로봇 제조기업의 국산 로봇부품 대체 확약서 (기존 사용 외산부품 제품명 및 제품 코드 기재, 신규로 대체할 국산부품 제품명 및 제품코드 기재)	○	○	○	해당사항이 있는 기관만 제출

\*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 날인 必

\* 서류 접수시 제출서류 누락, 잘못된 서류 제출 등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제외

## (2) 선정절차 및 방법

### □ 선정절차



### □ 선정방법

- (서류심사) 필수 제출서류 확인, 회계사를 통한 재무심사 등을 통해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\* 확인

\* 근거 : <별표2>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(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)

\* 서류심사는 적부 심사로, 기준을 만족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2단계 현장평가 진행

- (현장심사) 로봇부품 기업 중심의 로봇부품·시설·공장 현장 확인 원칙, 필요시 수요처의 의지 파악을 위하여 로봇 수요처 현장 확인 병행

\* 별도의 점수 없이 지표별 심사(적격, 미흡, 부적격) 및 심사의견 도출 후 '(3단계) 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'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

\* 평가표(안)

평가항목	평가내용
사업계획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시한 사업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추어 적정한가?</li> <li>○ 추진체계 구성 및 추진일정 등은 적합한가?</li> <li>○ 제시한 로봇부품 실증 예산의 구성은 적정한가?</li> </ul>
수행 능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로봇부품 및 로봇의 생산능력 및 운영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?</li> <li>○ 사업기간 내에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로봇 수요처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로봇부품의 생산이 가능한가?</li> <li>○ 참여기업들은 사업을 이끌어갈 역량과 의지를 보유하고 있는가?</li> <li>○ 참여인력들은 본 사업추진에 적합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?</li> <li>○ 참여인력들의 업무분장은 적절한가?</li> <li>○ 로봇부품의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았는가?</li> <li>○ 민간 매칭은 21년 연내 가능한가?</li> </ul>
사업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업 목적에 맞는 로봇 부품을 보유하고 있는가?</li> <li>○ 사업대상 및 내용은 사회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?</li> <li>○ 사업종료 후 대상 로봇부품(사업모델)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가?</li> </ul>



○ **(발표평가 및 사업비 심의)** 과제 총괄책임자 발표 (사업계획, 수행능력 및 사업성 등)를 통해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심의

- 평가위원회는 발표평가에 따라 지원우선순위 및 사업비 지원금액 (규모)를 산정

\* 과제 총괄책임자가 전체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 후 질의응답을 실시하며, 지자체 등 참여기관별 관계자 1인 참석 필수

\* 평가점수는 최고·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계산하며, 70점 미만인 경우나 추가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제외

\* '제품검증형' 과제와 '현장실증형' 과제 평가표(안)

구분	평가지표	배점
사업계획의 적정성(30)	◦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	10
	◦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·타당성	10
	◦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	10
수행능력(30)	◦ 자체 보유 인프라(인력, 기술 등) 및 로봇부품 개량 역량	10
	◦ 필요 자원 및 역량 확보 계획의 구체성	10
	◦ 과제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	10
사업성(40)	◦ 시장분석 및 마케팅 전략의 구체성	10
	◦ 로봇부품의 우수성	10
	◦ 수요처 요구사항 분석 명확성	10
	◦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회적 가치창출 효과성	10
합 계		100

○ **(최종평가 및 사업비 확정)**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과제 및 지원사업비 확정

- 3단계 평가 후 진흥원은 지원우선순위 및 심의결과(사업비 규모 등)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, 컨소시엄의 재검토요청서\* 접수

\* 재검토요청서 : 심의결과(사업비 규모, 로봇 가격 등)에 따른 재검토 요청을 접수하며,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받지 않음

- 3단계 평가결과(우선순위, 사업비 심의결과) 및 재검토 요청서를 토대로 최종평가위원회 진행 후 지원대상 과제와 후보과제를 확정

\* 최종 평가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컨소시엄의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하며, 차순위 컨소시엄과 협약 진행

---

### (3)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

---

- (협약체결) 최종확정 후 진흥원과 컨소시엄(주관, 참여기관) 간 다자 협약 체결
- (국비 지급) 정부출연금(국비)은 제출필요서류\*를 진흥원에 제출 하였을 때 전액 지급

\* 필요서류 : 이행보증보험(주관기관 발급), 생산물 배상책임(PL) 보험, 지정은행 사업비 신설계좌

-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지정하는 시스템 및 신설 계좌를 개설 하여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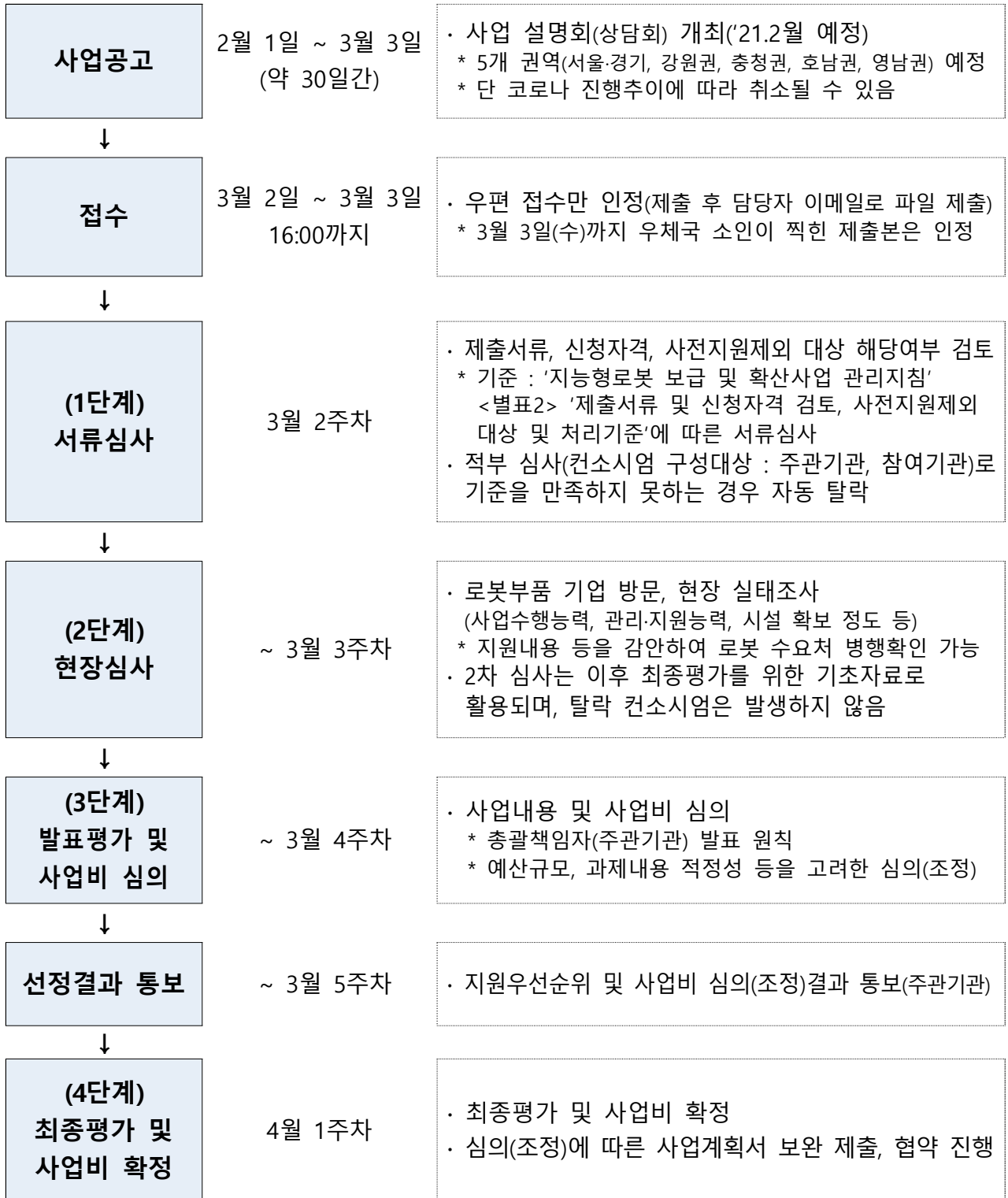
\* 총사업비(국비 및 민간부담금)은 사업비를 사용하는 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·운영 되어야 함 (기존계좌,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)

\* 사업비를 사용(소요)하는 기관은 반드시 계좌개설, 시스템을 사용해야 함

\* 주관기관은 반드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여 지정 사업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운용 하여야 하며, 이는 필수사항으로 지자체가 주관기관을 맡았다면 반드시 해당사항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할 것

## IV

## 추진일정 및 절차



- 제출된 서류는 일절(一切) 반환되지 않으며, 평가결과는 (총괄)주관 기관의 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
- 선정평가는 공고문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,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
- 제안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
- 과제에 선정된 컨소시엄은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, 전시,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함
-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
- 사업 수행결과로 취득되는 로봇 및 로봇부품, 테스트베드 등 유무형적 결과물은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에 따라 컨소시엄이 공동 소유하는 것으로 하되, 컨소시엄 간 별도 협의를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
  - 컨소시엄은 소유권 외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
- 관련 법령 및 규정
  -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(별첨참고)
- 선정제외 사유
 

※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,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  -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, 특성,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
- '21년 연내 민간부담금(현금) 매칭이 불가능한 컨소시엄
- 로봇부품 실증과 관련이 없거나 기술개발 성격인 과제
- 주관기관, 참여기관, 주관기관의 장, 참여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
-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
-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
-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(단,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(업) 제외)

※ '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 사업 관리지침' 별표 2 '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' 준용

구분	사전지원제외	사후관리
검토 기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의 부도</li> <li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</li> <li>5.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,000%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li> <li>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절"</li> </ol>	<p>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% 이상</li> <li>2.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% 이하</li> <li>3. 부분자본잠식</li> <li>4.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.0배 미만</li> <li>5. 최근 2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</li> <li>6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 의견이 "한정"</li> </ol>
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수행기관, 수행기관의 장, 총괄책임자의 경우 "사전지원 제외 대상"으로 처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"사후관리대상"에 해당됨을 보고</li> <li>○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"사후관리대상 과제"로 등록하여 관리하고,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심사 결과 "사전지원 제외" 대상에 해당된 경우,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지원여부를 결정</li> </ul> </li> </ul>